

부속서 XIII
제7.1조제1항에 규정된 지적재산권

제 1 조
국제협약

1. 당사국들은 자국이 당사국인 국제협정, 특히 다음의 다자 협정에서 규정된 자국의 의무를 재확인한다.

- 가. 「1994년 4월 15일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TRIPS)
- 나. 「1883년 3월 20일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1967년도 스톡홀름 의정서). 그리고
- 다. 「1886년 9월 9일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1971년도 파리 의정서)

2. 아래에 기재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당사국들은 늦어도 2008년도까지 다음의 다자 협정을 비준 또는 이에 가입하거나, 또는 이의 실제적 기준을 적용한다.

- 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제네바 1996년도)
- 나.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제네바 1996년도). 그리고
- 다. 「1961년 10월 26일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로마협약)

제 2 조
특 허

당사국들은 자국 국내법에서 최소한 다음을 보장한다.

- 가. 기술의 전 분야에서 발명을 위한 충분하고 효과적인 특허 보호. 다만, 발명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및 스위스에 대하여, 이는 TRIPS 협정 제27조제1항의 수준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호를 말한다. TRIPS 협정 제27조제2항에 규정된 것에 추가하여, 당사국들은 다음을 특허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인간의 치료를 위한 진단·치료 및 외과적 방법 또는 동물의 신체에 행하여진 그러한 방법. 이 규정은 그러한 방법 중 어느 것의 사용을 위한 제품, 특별히 물질 또는 구성물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 (2) 식물 또는 동물 변종, 또는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을 위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제법. 이 규정은 미생물학적 제법 또는 이에 의한 제품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식물 변종은 특허 또는 효과적인 독자적 제도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하여 보호된다.

노르웨이에 대하여, 이는 국내법으로 시행되는 1992년 5월 2일의 유럽경제지역에 관한 협정의 수준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호를 말한다.

나. 판매 허가 절차의 결과로서 초래되는 효과적인 특허기간의 단축에 대하여 가장 5년까지의 기간동안 의약품 및 식물 보호제¹⁾의 보상적 보호기간. 그리고

다. TRIPS 협정의 조건과 TRIPS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2001년 11월 14일 도하 각료회의에서 채택)에 합치하는 강제실시권의 부여

제 3 조 미공개 정보

당사국들은 TRIPS 협정 제39조에 따라 미공개 정보를 보호한다. 원개발 제품을 위하여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당사국들은 의약품 및 농화학품의 판매 허가를 위한 신청자가 새로운 화학물질을 이용하는 의약품 및 농화학품의 판매 허가를 위하여 권한있는 당국에 최초 신청자에 의하여

1)'식물보호제'는 최소한 다음을 포함한다.

- 그러한 물질이나 제재가 아래에 달리 정의되지 않은 한, 모든 해로운 생물체에 대하여 식물 및 식물 제품을 보호하거나 또는 그러한 생물체의 활동을 방지하는 제법
- 영양제(예 : 식물 성장 조절제)로서가 아니라, 식물의 생명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법
- 바람직하지 못한 식물을 멸하는 제법, 또는
- 식물의 일부분을 멸하거나 식물의 바람직하지 못한 성장을 제한 또는 방지하는 제법

제출된, 작성에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미공개 시험 또는 그 밖의 미공개 자료에, 허가일로부터 적절한 연수²⁾ 동안 원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 대신에, 당사국이 최초 신청자가 충분히 보상받는³⁾ 경우, 신청자가 그러한 자료에 원용하는 것을 자국 법에서 허용할 수 있다.

제 4 조 **산업디자인**

당사국들은 최소 15년의 보호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산업디자인의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자국 국내법에서 보장한다. 당사국은 상품 수리의 목적 상 사용되는 부속품의 디자인에 대하여 더 짧은 보호기간을 규정할 수 있다.

제 5 조 **지리적 표시**

1. 당사국들은 모든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 명칭을 포함하여,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하고 효과적인 수단을 자국의 국내법에서 규정한다.

2. 서비스에 대한 그러한 표시의 사용에 대하여, 당사국들은 서비스의 지리적 원산지와 관련하여 대중을 오도하거나 달리 불공정한 경쟁 행위⁴⁾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충분하고 효과적인 수단을 자국의 국내법에 규정한다.

3.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3년 후,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및 스위스는 지리적 표시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의 채택에 대하여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한다.

제 6 조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유지**

2) 연수(年數)는 당사국들의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3) 당사국들은 대한민국이 현재 그러한 보상제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에 유의한다.

4) 어떠한 사용이 불공정한 경쟁 행위를 구성하는지를 정의하는 것은 당사국들에 달려있다.

지적재산권의 취득이 권리가 부여되거나 등록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당사국들은 부여 또는 등록을 위한 절차가 TRIPS 협정, 특히 그 협정 제 62조에 따를 것을 보장한다.

제 7 조 **지적재산권의 집행**

당사국들은 TRIPS 협정, 특히 그 협정 제41조 내지 제61조에 따라 자국의 국내법에 집행규정을 규정한다.